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
관한 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3월 13일

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3월 13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“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”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“청소년의회교실”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-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과 운영계획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-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청소년의회교실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,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“제출의견 없음”
- '24. 3. 6.(수) ~ 3. 11.(월) /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소년"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2. "청소년의회교실"이란 충청북도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계획) ① 충청북도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"운영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
2. 운영기간, 참여대상, 모집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
3. 모의의회, 견학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.

제4조(선정 및 운영 등)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.

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과 협의하거나 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청소년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과 역할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5조(지원범위) 의장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시설 사용
2. 교통편의 제공
3. 다과 및 기념품 등 제공
4.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수료증)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)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 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.

제8조(협조)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청소년의회교실 활동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청소년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“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”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청소년의회교실 활동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안제5조(지원범위)
 - 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시설 사용, 교통편의 제공, 다과 및 기념품 등 제공,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1) 추계기간 :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
 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
- 2)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

- 1) 산출과정
 -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1식 : 22,300천원
 - 버스임차료 및 행사운영경비 1식 X 19,100천원 = 19,100천원
 - 참석자 급식 보상 1식 X 3,200천원 = 3,200천원
- 2) 산출결과 : '24년 22,300천원 이후, 평균 물가상승률 5% 반영하여 5년간 123,222천원 소요

* 향후, 운영 확대 등 추진상황에 따라 비용추계 변경(증액) 가능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출	22,300	23,415	24,586	25,815	27,106	123,222
청소년의회교실운영	22,300	23,415	24,586	25,815	27,106	123,222
재원 조달	22,300	23,415	24,586	25,815	27,106	123,222
도비	22,300	23,415	24,586	25,815	27,106	123,222

6. 작성자 :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 의사입법담당관 박종복(220-5150)